

학교법인 숙명학원

2022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 인	재적이사	8 인
감사정수	2 인	재적감사	2 인

1.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16: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년 8월 23일)

2. 장 소 :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707호(이삼봉 라운지)

3. 임원 출석 현황

o 참석 임원

- 이사(7인) : 박인국, 강동세, 윤영각, 윤은기, 이제호, 이행희, 장윤금
- 감사(2인) : 김의성, 이상록

o 불참 임원

- 이사(1인) : 송영숙
- 감사(0인) :

o 참석 직원 : 법인사무국장 황영식

4. 안 건

가. 정관개정 안

나. 수당 지급 규정 개정 안

5. 회의 내용

가. 개회선언

의장은 금일 회의 소집에 대한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말하고 개회선언한 후 전회 회의록(2022. 7. 14.) 낭독을 요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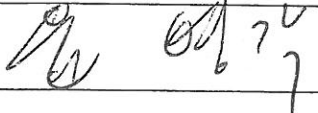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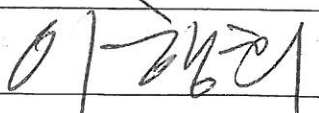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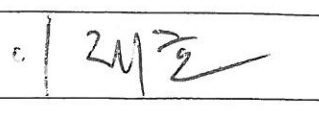
법인사무국장은 전회 회의록 전문을 낭독하다.

의장은 전회 회의록에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전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채택하다.

나. 심의안건

<제 1 호 안건> 정관개정 안

의장은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장윤금 총장은 정관 개정안을 첨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다.

<간 서 명>			
---------	---	--	---

정관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73조(총장 직속기구) ①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법무감사실, 대외협력실 , 인권센터,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교육혁신원 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를 두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법무감사실장, 대외협력실장 , 인권센터장 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⑤~⑥ (생략)	제73조(총장 직속기구) ① 총장 직속기구로 비서실, 법무감사실, 인권센터, 산학협력단, 학생군사교육단, 교육혁신원 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를 두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직을 둘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감사실장, 인권센터장 및 디지털휴머니티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73조의3(행정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경력개발처, 사무·관리처, 국제처, 디지털정보혁신처를 둔다. ②~④ (생략)	제73조의3(행정조직) ① 대학교에 기획처,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경력개발처, 사무·관리처, 국제처, 디지털정보혁신처, 대외협력처 를 둔다. ②~④ (현행과 같음)
	부 칙(2022. 8. 3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의장은 상기 정관개정 안에 대하여 참석 이사의 의견을 물으니, 윤은기 이사가 원안대로 정관 개정할 것을 발의하니 강동세 이사가 동의하고 윤영각 이사가 재청하여 참석이사 전원(7인) 찬성으로 의결하다.

<제 2 호 안건> 수당 지급 규정 개정 안

의장은 상기 안건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장윤금 총장은 수당 지급 규정 대하여 첨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다.

수당 지급 규정 개정 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② '수익과정'은 다음의 비학위과정, 교육과정 및 사업을 말한다. 1. 특수대학원 학칙 제34조, 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개설하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2.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34조에 따라 개설하는 비학위과정 및 공개강좌 3. 미래교육원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익과정'은 다음의 비학위과정, 교육과정 및 사업을 말한다. 1. 특수대학원 학칙 제34조, 시행세칙 제57조에 따라 개설하는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2.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34조에 따라 개설하는 비학위과정 및 공개강좌 3. 미래교육원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간 서 명>	윤영각	이행희	이재준
---------	-----	-----	-----

현 행	개 정 안
4. 한국음식연구교육원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5.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6. 숙명글로벌어학원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7. 아태여성정보통신원 규정 제4조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사업	4. <삭 제> 5. 르꼬르동블루-숙명아카데미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6. 숙명글로벌어학원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7. 아태여성정보통신원 규정 제4조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4조(수당의 지급) ① 각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u>면접, 논문지도, 논문심사, 문항출제, 채점, 감독</u>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 내에서 수당과 수당의 비용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교내정책연구과제, 대내외평가 및 외부지원사업관련 업무 수행 시 정책연구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익과정 운영부서가 간접비 공제 기준을 초과하여 수익을 달성한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 각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u>학생선발, 학생평가(출제, 채점, 감독, 심사 등), 학생지도, 논문지도, 논문심사</u>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 내에서 수당과 수당의 비용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교내정책연구과제, 대내외평가 및 외부지원사업관련 업무 수행 시 정책연구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익과정 운영부서가 간접비 공제 기준을 초과하여 수익을 달성한 경우, 초과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대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2. 8.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의장은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하여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윤은기 이사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발의하고 이에 이행희 이사가 동의하니 이제호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7인) 찬성으로 의결하다.

6. 폐회선언

의장은 이사회를 마치고 회의록 간서명자로 운영각 이사, 이행희 이사, 이제호 이사를 선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6 : 35이 되다.

2022년 8월 31일

위 사실을 확인함.

<간 서 명>	윤은기	이행희	이제호
---------	-----	-----	-----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박 인 국

박인국

이 사 강 동 세

강동세

이 사 윤 영 각

윤영각

이 사 윤 은 기

윤은기

이 사 이 제 호

이제호

이 사 이 행 회

이행회

이 사 장 윤 금

장윤금

감 사 김 의 성

김의성

감 사 이 상 록

이상록

<간 서 명>

윤영각

이행회

이제호